



물류표준화 촉진을 위한 물류설비인증제도 도입

▶ 산업자원부,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◀

산업자원부 제공

- 산업자원부는 유통신업태 출현·확산, 중소유통업의 침체 등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유통·물류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, 동 법률개정안을 10.15(화)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음
-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

① 물류설비인증제도 신설

- 산업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물류표준화를 확산기로 하고, 산자부장관이 물류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에 맞는 장비·기기에 대하여 물류설비인증을 실시
- * 인증대상설비(예) : 패렛트, 패렛트 랙, 컨베이어, 컨테이너 등
- 인증된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·공급자와 사용자에 대한 자금지원,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였음

②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 도입 및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요건 신설

- 실수요, 입지상황 등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공동집배송센터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집 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였음
- 현재 집배송시설의 집단적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공동집배송센터가 지정요건, 시설·운영기준 등에 미달할 경우 시정명령 부과와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

③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

-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을 현행 영업활동에서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여,



- 백화점,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의 지역출점과 관련하여 인근 중소상인과의 상권갈등 등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또 현재는 동 위원회가 유통분쟁사안을 심의만 하고 시·도지사가 권고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던 것을 동 위원회가 직접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

④ 대규모점포 등록제도를 사전신고제도로 규제완화

- 현재 매장면적 3,000㎡이상의 대규모점포 등록제도를 사전신고제로 규제완화하고, 신고접수 업무도 종전 시·도사무에서 시·군·구사무로 변경하여 지방이양을 촉진하였음

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한 발전시책의 명시적 근거 마련

-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제고 및 구조개선 촉진을 위하여 중소점포 조직화·협업화 사업인 체인사업 발전시책의 수립·추진 근거를 신설하고, 또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자체 등의 책무사항을 신설하였음

⑥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 변경

-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통 교육·연수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"판매관리사"를 "유통관리사"로 명칭변경하며, 그 직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

I. 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안(전문개정)

1. 추진배경

- 유통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97년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제정되었으나, 법의 기본체계는 시장법, 도소매업진흥법 등 과거 규제법체계를 유지
- 유통시장 개방, 신업체 출현·확산, 인터넷 유통혁명 등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개정수요도 대두
 - 유통전문인력 양성, 물류표준화 등 유통·물류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마련의 시급성



- 대형할인점등 신업태 성장과 소비자트렌드의 변화로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촉진 필요성의 증대
- 대규모점포 출점관련 분쟁증대 및 중소점포·지역경제와의 조화·공존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

2. 추진경과

- 유통산업발전법 전문개정시안 마련('01. 7월말)
- 관계부처 협의('01.8.7~8.17)
- 입법예고('01. 8.25~9.15), 공청회('01.9.11)
- 규제심사('01.11.28완료), 법제처 심사('02.10월 완료)

3. 주요 개정골자

- ① 물류표준화 확산을 위해 "물류설비인증제도"를 도입하며, 물류신기술 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
- ② 단지개념인 기존의 "공동집배송단지"를 시설개념인 "공동집배송센터"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자요건을 명확히 하며, 지정취소요건 신설 등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
- ③ 대규모점포 등록제도를 사전신고제도로 개선하고 종전 시·도에 하던 것을 시·군·구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
- ④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제고 및 구조개선 촉진을 위하여 중소점포 조직화·협업화 사업인 체인사업 발전시책의 수립·추진 근거를 신설하고, 또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자체 등의 책무사항을 신설
- ⑤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통 교육·연수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"판매관리사"를 "유통관리사"로 명칭변경하며, 그 직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
- ⑥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의 범위에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외에 대규모점포의 지역출점과 관련한 인근 지역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사항을 포함
- ⑦ 시범도매센터 지정, 저가지향형점포 지정,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미흡한 사항을 삭제

4. 주요골자별 개정내용



가. 물류설비인증제도 신설(제24조)

신설 필요성

- 국내 뒤떨어진 물류표준화 수준은 일관수송을 어렵게 하고 물류시설·장비의 효율 저하를 야기하여 높은 물류비 부담을 초래
 - * 표준파렛트 사용율(97) : 한국 16.8%, 일본 30%, 미국 60%, 유럽 90%
- 물류표준화의 종합적인 기준인 KS A 1638규격의 유니트로드 시스템通則은 제정(95.12)되었으나, 이의 활용촉진을 위한 유인제도가 미흡
 - 비표준규격의 물류시설·기기들의 표준화 추진시 비용손실문제로 기업들이 물류표준화 투자에 대한 소극적 입장

개선방안

- 물류표준화 촉진을 위해 산자부장관이 물류표준을 정하고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·기기에 대해 물류설비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
- 물류인증설비 제조·공급자의 생산공정 개선 및 신·증설 투자사업과 사용자의 설비개체사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
- 행정기관,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류인증설비를 우선구매·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
- 물류설비인증에 관한 산자부장관의 권한은 기술표준원장에 위임

나.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및 지원제도 개선(제26조 내지 제32조)

현행규정

-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위해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하고 관련법상의 인·허가 의제처리, 부지확보, 건립 자금 등을 지원

현황 및 문제점

- 공동집배송단지 지정·조성현황(완공 2개단지, 공사중 3개단지, 사업중단 2개단지)



산업정책 / 물류표준화 촉진을 위한 물류설비인증제도 도입

사업명	수도권 I지구	수도권 II지구	부산	대구	광주	경기 광주	시화 공단
위 치	경기 용인 수지	경기 용인 수지	사상구	북구 산격	서구 풍암, 매월	경기 광주 도척면	경기 시화
규 모	149,879m ² (45,338평)	138,590m ² (41,923평)	39,016m ² (11,823평)	837,721m ² (253,411평)	636,900m ² (192,000평)	264,000m ² (80,000평)	43,022m ² (13,000평)
유치 시설	집배송단지	집배송단지	집배송단지, 도소매단지	도소매, 집배 송단지, 무역 센타	집배송단지, 도소매단지	집배송단지	집배송단지
사업 기간	92~미정	92~97	94~98	93~2001	97~2000	95~2003	96~미정
사업 주체	(주) 대한물류	(주) 한국물류	부산건재 집배송	대구시, 입주업체	토개공, 입주업체	(주) 한국물류	(주) 대경통 운
진척도	기반공사완료 (사업일시 중단상태)	완공	완공	건축공사중 공정 68%	기반공사완료 건축공사중	유통단지지정 작업추진중	사업중단

- 단지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실제지원은 단지내 집배송센터에 이루어지고 있으며,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의 유통단지와의 구분이 불명확
- 단지가 지정요건 및 시설·운영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, 시정명령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미비
- 조성주체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고 대부분 영세조합, 사업자단체에 의해 대규모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자금난,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사업이 지연

□ 개정안

- 지역개념의 공동집배송단지를 시설개념의 공동집배송센터로 변경
- 실수요, 입지상황 등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공동집배송센터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
 - * 개발지구내에 건립되는 공동집배송센터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
- 우수도매배송서비스업자, 우수체인사업자 등이 공동집배송센터 건립시 지원자금 우선 지원
-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, 시설·운영기준, 사업시행자 요건 미달시 시정명령 부과 및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



<시정명령>

- 지정요건 및 시설·운영기준 미달시

<지정취소>

-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
-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-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

다.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(제33조 내지 제37조)

□ 현행규정

- 대규모점포와 인근 도·소매 점포간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시·도지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의 변경을 권고,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
- 분쟁사유 : 영업시간·휴무일·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활동
- 분쟁조정신청자수 요건 : 50인(시행규칙 제14조)

□ 개정 필요성

- 분쟁조정 대상을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에만 한정함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출점관련 분쟁의 신속·효과적인 조정이 불가능
- 유통법령상 대규모점포 출점관련 분쟁조정제도 미비로 환경·교통·건축법령 등의 인·허가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
* 최근 대규모점포 출점관련 분쟁사례 : 동대문시장(삼성테스코), 부산재래시장연합회(E마트 서면점), 부산 남천시장(메가마켓 남천점), 경기 하남시장(LG유통 하남점) 등
-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기능만 있어 시·도의 자문기구에 불과하여,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위원회의 역할 미미
-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가 대통령령에 규정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지자체, 분쟁당사자 등의 인식이 미흡



□ 개정안

- 대규모점포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이외에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
 - *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에 의해 대규모소매점포 설립시 사업계획 공표, 공청회, 지방 정부 견해 설명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
(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호에 중점)
-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권한 부여하고 설립 · 운영근거를 법에 명시
 -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분쟁조정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여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 및 조정 기능을 활성화
 - 시행령상의 위원회 설립 ·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위상 강화
- ※ 분쟁조정절차
 - 시 · 군 · 구 위원회에 조정 신청 → 시 · 군 · 구 위원회 조정안 작성(자료요청, 출석요구 등) → 불복시 시 · 도 위원회에 조정 신청 → 시 · 도 위원회 조정안 작성
 -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시 위원회 조정서 작성 → 위원장 및 각 당사자 기명날인시 당사자간 합의 성립으로 봄
- 시행규칙 개정시 분쟁조정신청자 수 요건을 완화

라. 대규모점포 등록제도 개선(제8조)

□ 현행규정

- 매장면적 3,000㎡이상의 대규모점포는 시 · 도에 등록
 - 행위무능력자, 미복권자, 전과자 등 결격사유자의 경우 등록 불허
 - 사위, 부정에 의한 등록, 명령 · 처분 위반시 등록 취소

□ 개정 필요성

- 대규모점포 시설 · 운영기준 등의 폐지(99.2)로 등록제도 유지 실효성이 미흡
- 유통환경의 변화로 결격사유자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 등에 대한 우려가 크게 감소
- 다만, 대규모점포의 지역경제 · 사회적 중요성 및 통계목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신고는 필요



□ 개정안

-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사전신고제로 전환(신고필증 교부후 공고)
 - 미신고, 하위·부정신고 등의 위반과 장기간 휴업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, 신고의 효력상실 등으로 규율
 - 대규모점포 신고접수업무를 시·도 사무에서 시·군·구 사무로 변경(지방이양위원회 권고사항)

마. 유통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(제20조 및 제21조)

□ 현행규정

-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
- 유통기법 향상·유통관리·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판매관리사자격제도 운용

□ 개정 필요성

- 서비스산업인 유통산업 경쟁력의 원천은 인력에 있음
 - 최근 산업태의 확산, 업태간 융합, 유통정보화·국제화 진전, 전자상거래, 소비행태의 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지식기반형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
 - 특히,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의 구조혁신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상황
- 현행 판매관리사제도는 유통환경 변화와 기업의 현실적인 인력수요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인식과 경영층 관심이 크게 부족하고 자격증 취득자의 취업률도 저조
- 자격시험의 내용이 유통업 실무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유통업과 관련된 이론적 기초지식 습득에 한정
- 현직 유통업 종사자도 자격증 취득에 대한 열의 부족
- * 판매관리사자격 취득 현황('00.말기준) : 1급(20명), 2급(37,197명), 3급(41,460명)

□ 개정안

- 유통교육기회 확대, 유통인력 양성시책 추진근거 신설



- 중소·여성유통인력 양성, 실직자 재취업·창업 촉진을 위한 유통교육, 현장교육·인터넷교육 등의 확대 등
- 유통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·연수기관이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
- 전문적인 유통·물류지식 및 기법을 습득한 유통인력의 양성을 위해 현행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을 변경
- 유통관리사의 직무범위 개선
 - 유통경영·관리기법의 향상, 조사·연구, 진단·평가, 상담·자문 등
- SCM 확산, 글로벌경쟁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실적인 수요에 맞도록 시험과목 등 선발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(시행령 개정시 반영)

□ 유통산업발전법 연혁

- 61년 : 『시장법』 제정
- 81년 : 전문개정
- 80년 : 『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』 제정(경제기획원)
- 91, 94년 : 水道法등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2차례 개정
- 95년 : 법명칭을 『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』으로 변경
 - * 소관부처 변경 : 재정경제원 → 통상산업부
- 86년 : 『도·소매업진흥법』 제정, 『시장법』 폐지,
- 90, 91년 :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2차례 개정
- 94년 : 전문개정
- 97.4월 : 『유통산업발전법』 제정, 『도·소매업진흥법』, 『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』 폐지
- 99.2월 : 부분개정
- 2002년 : 전문개정 추진중